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담금 신설·폐지 시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 신설〉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7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담금 폐지 시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단 서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4. 11. 26.

다.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담금 신설·폐지 시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 신설 (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 부담금 소관 기관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ㄴ 기재부장관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u><신설></u> -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 (현행과 같음) - ㄴ 기재부장관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u>다만, 부담금을 신설·폐지하려는 경우 부담금 소관 기관장은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 제출과는 별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함</u>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부담금을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되었으며,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사¹⁾,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²⁾,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³⁾ 등 부담금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신설⁴⁾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
-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도 동일함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⁵⁾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 폐지⁶⁾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그

-
-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당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폐지되거나 관련한 공익사업이 축소·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함으로써 부담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반면,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의 신설·폐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근거 법률(소관 상임위원회)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별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실익이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담금의 신설·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 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제공할 경우,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심사 요청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신설타당성평가”라고 함)를 거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05093호)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설타당성평가 제도가 신설될 경우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풍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토대로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별도로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생길 실익과 사전 보고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 ① (생략)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u>부담금을 신설·폐지하려는 경우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제출과는 별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